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창립일 지정 및 운영 규정

2. 제정이유

- 복지재단의 창립일을 지정하여 기념 및 부대행사 등의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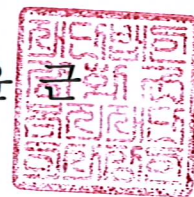
가. 창립일 지정(안 제3조)

나. 기념행사 등(안 제4조)

제6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창립일 지정 및 운영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월 15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

2. 제정이유

-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라 복지재단 임직원의 부패방지과
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에
관한 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(안 제3조)
- 나. 공정한 직무수행(안 제4조~제9조)
- 다.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등(안 제10조~제17조)
- 라.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(안 제18조~제21조)
- 마. 위반시의 조치 등(안 제22조~제27조)

제6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임직원
행동강령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월 15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